

29. 원격수업운영규정

제정일 : 2021년 8월 17일

개정일 : 2022년 7월 12일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정의)

- ① 원격수업이란 인터넷, 정보통신 등의 수단을 통하여 교수-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70%이상 이루어지는 수업을 의미하며 원격수업은 수업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수업과 비동시적 원격수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.
- ② 원격병행수업(이하 “원격병행”이라 한다.)이란 정규 시험을 제외한 수업의 70% 미만을 원격의 형태로 운영하는 수업을 말하며 이 경우 원격수업 강좌로 인정하지 않는다. 다만, 수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원격수업운영규정에 준한다.

제3조(원격수업 관리위원회)

- ① 원격수업 콘텐츠의 품질관리 및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직원, 학생, 전문가 등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30%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.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,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22년 7월 12일)
-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관장한다.
 1.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
 2.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
 3. 원격수업 교과목 분류 및 개선
 4. 원격수업의 운영, 이수기준, 이수가능학점 및 평가 관리
 5. 기타 원격수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-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학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. (신설 2022년 7월 12일)
 1. 원격교육의 시기, 방법 등 운영계획
 2. 원격교육이 가능한 교과목의 선정
 3. 원격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관리
 4. 그 밖에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 · 이수기준, 이수가능 학점 및 평가 관리
 5. 기타 원격수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4조(과목개설 및 개설기준)

- ① 원격수업에 개설되는 교과목은 교과과정에 편성되어있는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원격수업 개설 과목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 할 수 있으며, 교과목 내 원격수업 비율과 그에 따른 개설 방식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③ 원격수업은 시간표 편성에 따라 분반할 수 있다.
- ④ 강의 영상의 질이 낮거나 강의 수준 및 운영이 부실하여 원격수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강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⑤ 개강 후 해당과목의 수강 변경, 취소에 의해 실질적인 개설이 어려울 때, 교무처장은 해당분야 주임교수와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얻어 폐강할 수 있다. (신설 2022년 7월 12일)

제5조(수강신청) 수강신청은 본교 「학칙」 및 「시행세칙」에 준한다.

제6조(이수시간 및 수업시간)

- ① 원격수업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며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 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.
- ② 원격수업의 1차시 담당교수의 수업시간은 반드시 25분(1학점 기준) 이상으로 실시한다. 본교는 원격수업의 1차시 수업시간을 40분 이상으로 권고한다.
- ③ 콘텐츠 구성 시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학습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④ 매학기 원격수업 이수가능 학점은 본교 「학칙」 제23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.

제7조(원격수업의 관리 및 운영)

- ① 원격수업과 관련한 교과목의 개설 및 성적평가 등의 관리는 교무처에서 주관 한다.
- ② 원격교육은 학습관리시스템(LMS)을 통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본교의 원격교육지원센터는 교무처, 전산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교무처는 학습지원, 전산팀은 운영지원을 담당한다. (개정 2022년 7월 12일)

제8조(출석관리)

- ① 출석은 「학칙」 제33조 ①항에서 정한 12주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일수에 미달된 교과목은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.
- ② 원격수업의 출석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22년 7월 12일)
 - 1. 출석 : 원격교육에 대한 출결은 학습관리시스템 에서 주차 단위로 관리하며, 주차별 콘텐츠 학습 소요시간의 평균 수강비율은 별도로 정한다.
 - 2. 지각 : 주차별 콘텐츠 학습 소요시간의 평균 수강비율은 별도로 정한다.
 - 3. 결석 : 주차별 콘텐츠 학습 소요시간의 평균 수강비율은 별도로 정한다.

제9조(성적평가)

- ① 성적평가는 정기고사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강의계획서의 성적평가방법(비율)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, 수업 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 정기고사에 대하여 원격평가 또는 과제물 대체 등 다른 평가방식 적용이 가능하다.
- ② 원격평가를 실시한 이후 부정행위 및 대리시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소한다.

제10조(강의평가)

- ① 원격수업 강의평가는 대면수업과 동일한 방식이나 온라인 강의평가로 실시하되 중간고사, 기말고사 전에 실시하며, 그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 (개정 2022년 7월 12일)
- ② 원격수업병행 강의평가는 대면수업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되 기말고사 전에 시행한다.

제11조(저작권)

- ① 본교의 원격수업 콘텐츠의 지식재산 소유권은 본교에 귀속한다.
- ②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복사나 활용 등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저작권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개발교수에게 있다.
- ⑤ 원격교육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에 위배되는 외부자료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